

고성군 세 조례 중 개정 조례 안

(의안번호 제541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5. 2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6. 2
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1999. 6. 24

총무위원회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0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고성군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cc당 세액을 단계별 인하함.(안 제37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0 경남도 세정 13405-10018('99.1.11)표준안에 의거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, 단계별 세액을 인하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 부과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0 1999. 6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